

결론

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3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3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(2001. 9. 15, 대통령령 제17363호)됨에 따라 현행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
 - “9인 이내”에서 ⇒ “15인 이내”로 함(제2조)

지방재정경제위원회사무부동행(국무총리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2001. 9. 15일 대통령령 제17363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
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
개정됨에 따라,

투·융자 심사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
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「9인 이내」에서
「15인 이내」로 증원하려는 것으로서

○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